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 일 시 : 2022. 3. 14.(월) 16:00 ~ 16:30
- 장 소 : 대학본관 4층 기획처장실
- 참석자 : 홍성덕, 전재홍, 이기훈, 송태진, 한상선, 이환, 이승아, 이후동(8명)
- 불참자 : 박찬우(1명)

※ 회의안건

1. 대학재정장학과-431에 의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내용을 「학칙」 제59조(등록금심의위원회)제3항에 의거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
2.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3항에 맞추어 전문가 위원 선임시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1호 회의 안건: 대학재정장학과-431에 의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내용을 「학칙」 제59조(등록금심의위원회)제3항에 의거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

위원장(기획처장): 간사께서는 성원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위원 정수 9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위원장(기획처장):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회의자료 상세 설명)

위원장(기획처장):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교육부 공문에 따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수,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를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기획처장): 또한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회의)를 개정, 신설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재적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10분의 4로 낮추고, 회의 일정 및 회의자료를 미리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이 아닌 참석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수 위원과 직원 위원을 교수회 추천 교수 1명, 직원회 추천 교수 1명으로 규정을 바꾸어 위원 위촉을 더욱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간 서 명	홍성덕		전재홍		이기훈	
	송태진		한상선		박찬우	불참
	이 환		이승아		이후동	

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위원: 제6조(회의)에서 임시회의 소집의 경우 10분의 4보다 재적위원 비율에서 재적위원 비율을 더 낮출수 있습니까?

위원장(기획처장): 현재 재적위원 비율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교육부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여 내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기획처장): 추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십니까?

학생 위원: 위원이 아닌 참석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기획처장): 누구를 언제 참석시킬 것인지는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의에 참석자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합의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학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 위원: 위원으로 교수 1인, 직원 1인을 교수회 1인 추천 및 직원회 1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기획처장): 더욱 구성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교수회와 직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교수 위원: 교수회의 추천보다는 교수 1인 추천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기획처장):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구성원들간의 협치를 위해 교수회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임의로 지정한 교수 위원보다도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오히려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소통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1호 회의 안건에 대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 전원: 재청합니다.

■2호 회의 안건: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3항에 맞추어 전문가 위원 선임시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위원장(기획처장): 다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3항에는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고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개

간 서 명	홍성덕	홍성덕	전재홍	전재홍	이기훈	Lee
	송태진	송태진	한상선	한상선	박찬우	불참
	이 환	이 환	이승아	이승아	이후동	이후동

정하여 “기존의 외부위원추천: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 추천”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 하여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학생 위원: 상위 법령을 따르는 안건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교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기획처장): 감사합니다. 제2호 회의 안건의 경우 규정검토위원회와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금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결정사항

■ 1호 회의 안건: 대학재정장학과-431에 의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내용을 「학칙」 제59조(등록금심의위원회)제3항에 의거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

⇒ 원안대로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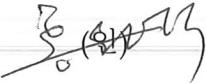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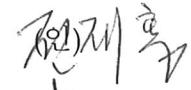
■ 2호 회의 안건: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3항에 맞추어 전문가 위원 선임시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원안대로 통과

간 서 명	홍성덕	홍성덕	전재홍	전재홍	이기훈	Lee
	송태진	송태진	한상선	한상선	박찬우	불참
	이 환	이 환	이승아	이승아	이후동	이후동

2022. 3. 14.
위 사실을 확인함

전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홍 성덕	
위원	전재홍	
위원	이기훈	
위원	송태진	
위원	한상선	
위원	박찬우	불참
위원	이환	
위원	이승아	
위원	이후동	